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 3. 24 선고 2022가단112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2. 20.

판 결 선 고 2023. 3. 2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경남 합천군 D 대 274㎡ 중 1/7 지분에 관하여 2022. 4. 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경남 합천군 D 대 274㎡ 중 1/7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2. 4. 8. 접수 제54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다음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3783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위 법원은 2015. 11. 24. ‘C은 원고에게 32,743,381원 및 그 중 12,432,704원에 대하여 2015.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2. 18.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따라 확정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나. C의 모친인 F는 경남 합천군 D 대 2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11. 3. 11.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으로 1) 자녀인 G, B, H, C, I, 2) 자녀 망 J의 대습상속인으로 망 J의 상속인인 배우자 K, 자녀 L, M, 3) 자녀 망 N의 대습상속인으로 망 N의 상속인인 배우자 O, 자녀 P, Q이 있다. 망 F의 상속인들은 2022. 4. 8.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으로 서산시 R 답 14934.9㎡ 중 991/14934.9 지분(개별공시지가 13,378,500원 상당)과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7 지분(개별공시지가 1,174,286원 상당)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채무(2022. 4. 8. 기준 57,469,133원)를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합천등기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마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원